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4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임원	8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2 인

1. 일 시 : 2024년 6월 26일(수) 14:00

(회의소집 통보일: 2024년 6월 18일)

2. 장 소 : 이사회 회의실 (원격영상회의 병행)

3. 참석임원

- 이사(7인) :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이종민 이사, 김기영 이사, 오승훈 이사, 배일환 이사, 이향철 이사 (불참 : 김영만 이사)
- 감사(2인) : 배홍기 감사, 이동훈 감사

4. 안 건

□ 제2024-22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3)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4)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 5) 참빛인재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안)
- 6)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7) 대학원 장학 규정 개정(안)
- 8)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 9)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10) 직제 규정 개정(안)
- 11)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12)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안)
- 13)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간서명			
-----	--	--	--

- 제2024-23호 :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1) 2024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안)
 - 2) 명예교수 임용 제청(안)
- 제2024-24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 제2024-25호 : 남대문중학교 교감 임용에 관한 건
- 제2024-26호 : 초·중등학교 202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건
- 제2024-27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5. 회의내용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이세원 간사가 참석 임원(이사 7인, 감사 2인)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흥배 교무처장 입실함)

조선영 의장은 이세원 간사에게 전차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를 지시하자, 이세원 간사가 보고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 전, 천장호 총장에게 대학 현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자, 천장호 총장은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 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 선정과 자율전공 학부 시행 예정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에 대하여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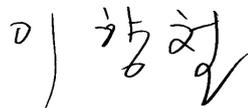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퇴실함)

□ 제2024-22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22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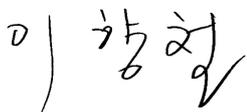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참빛인재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대학원 장학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부칙 참조)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부칙 참조)
직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6.26.

※ 붙임1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제2024-23호 :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23호 안건을 상정하고 전홍배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전홍배 교무처장은 2024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안), 명예교수 임용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간서명			
-----	---	--	---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또한, 기획처장과 교무처장에게 총장 경고처분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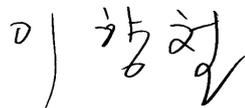
▪ 2024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특별전임) 재임용

번호	학과(부)	직종	직급	성명	임용사항		
					내용	기간	일자
1	상담복지 정책대학원	특별전임 (교육트랙)	부교수	김고은	재임용	2024.09.01. ~2027.08.31.(3년)	2024.09.01.
2	상담복지 정책대학원	특별전임 (교육트랙)	부교수	민경화	재임용	2024.09.01. ~2027.08.31.(3년)	2024.09.01.
3	산학협력단	특별전임 (산학협력트랙)	부교수	이경학	재임용	2024.09.01. ~2027.08.31.(3년)	2024.09.01.

▪ 명예교수 임용

번호	성명	소속	심의결과		비고
			내용	임용일자	
1	전보옥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	명예교수 추대 가결	2024.09.01.	
2	김도형	경영대학 경영학부	명예교수 추대 가결	2024.09.01.	
3			명예교수 추대 부결	-	

□ 제2024-24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간서명			
-----	---	--	---

(광운대학교 정석재 기획처장, 전홍배 교무처장 퇴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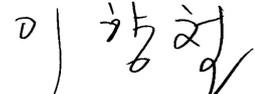
□ 제2024-25호 : 남대문중학교 교감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25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남대문중학교 교감 임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비고
				내용	일자	
남대문중학교	교감	송명석		임. 교감(중임) 임기: 2024.07.18.-2024.08.31.	2024.07.18.	

간서명			
-----	---	--	---

□ 제2024-26호 : 초·중등학교 202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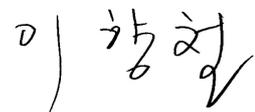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제2024-26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초·중등학교 202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학교명	신규채용과목	채용인원	신규교사 채용 사유(학교의견)	비고
광운초등학교	초등담임	1명	2024.2.29.자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정보·컴퓨터	2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인공지능고등학교로 정보·컴퓨터(인공지능 분야) 교원의 수요 증 가에 따른 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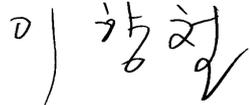
□ 제2024-27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선임에 관한 건

간서명			
-----	---	--	---

조선영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안건 제2024-23호(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건), 제2024-24호, 제2024-27호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비공개 처리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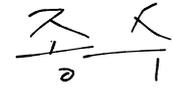
6. 폐회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5시 10분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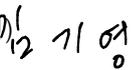
간서명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이 사 이 종 수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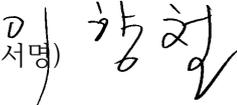
이 사 이 종 민 (서명) 

이 사 김 기 영 (서명) 

이 사 오 승 훈 (서명) 

이 사 김 영 만 (서명) 불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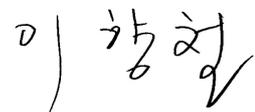
이 사 배 일 환 (서명) 

이 사 이 향 철 (서명) 

감 사 배 흥 기 (서명) 

감 사 이 동 훈 (서명) 

2024. 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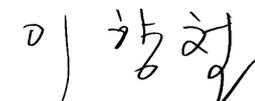
간서명			
-----	---	--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29조(휴학절차)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u>보호자의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29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u>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u></p> <p>② <u>일반휴학 중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종합병원 이상 전문의의 4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 개정 및 항분리 신설, 자구 수정 ·질병휴학기 준 신설
<p>제33조(복학의 시기) 휴학한 자의 복학은 <u>학기 초 수업일수 1/4 기간 이내</u>에 허가할 수 있다.</p>	<p>제33조(복학의 시기) 휴학한 자의 복학은 <u>개강 후 3주 이내</u>에 허가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간 개정
<p>제48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 ② (생략)</p>	<p>제48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48조의2(외국어특기자전형입학자) ① ~ ② (생략)</p>	<p>제48조의2(외국어특기자전형입학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48조의3(성인학습자의 학점인정) <u>「고등교육법」 제23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참빛인재대학 재학생이 입학 전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전공별 관련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정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빛인재대학 신설에 따른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점인정 체계 마련

간서명	조성용	이종민	이항협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빛인재대학 학사 운영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p>	
부칙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			
-----	---	--	---